

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

[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관련]
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

「식품위생법」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등을
긴급 회수합니다.

가. 회수제품명 : 산약 마

나. 포장일자 : 2025. 9. 30.

다. 회수사유 : 식품첨가물(이산화황)의 허용기준 초과 검출
(175ppm)

라. 회수방법 : 강제회수

마. 회수영업자 : 허브마켓(주)

바. 영업자주소 : 서울시 동대문구 약령중앙로2길 9 (제기동)

사. 연 락 처 : 02-969-9078

아. 기타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

-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회수명령기관 : 동대문구 보건위생과(☎ 02-2127-4745)